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

서울과학기술대학교(교무과), 02-970-6028

제정	2012. 3. 1.	개정	2012. 8. 29.	개정	2012. 12. 7.
개정	2013. 3. 1.	개정	2013. 4. 19.	개정	2013. 10. 30.
개정	2013. 12. 31.	개정	2014. 4. 7.	개정	2014. 9. 24.
개정	2014. 11. 18.	개정	2015. 1. 28.	개정	2015. 4. 9.
개정	2015. 5. 20.	개정	2015. 6. 29.	개정	2015. 11. 6.
개정	2015. 12. 31.	개정	2016. 2. 29.	개정	2016. 9. 1.
개정	2016. 12. 28.	개정	2017. 2. 28.	개정	2017. 7. 3.
개정	2017. 12. 29.	개정	2018. 2. 28.	개정	2018. 7. 3.
개정	2018. 8. 29.	개정	2019. 2. 5.	개정	2019. 7. 30.
개정	2019. 9. 30.	개정	2020. 1. 1.	개정	2020. 3. 13.
개정	2020. 5. 18.	개정	2020. 7. 23.	개정	2020. 8. 30.
개정	2021. 1. 8.	개정	2021. 2. 25.	개정	2021. 3. 30.
개정	2021. 7. 2.	개정	2021. 9. 1.	전부개정	2021. 10. 1.
개정	2022. 1. 1.	개정	2022. 3. 1.	개정	2022. 7. 1.
개정	2022. 9. 1.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28.
개정	2023. 6. 1.	개정	2023. 9. 1.	개정	2024. 1. 1.
개정	2024. 2. 29.	개정	2024. 6. 1.	개정	2024. 9. 13.
개정	2024. 10. 18.	개정	2025. 1. 1.	개정	2025. 3. 1.
개정	2025. 6.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학칙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의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조직과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목적 및 교육목표)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는 창의를 정신을 바탕으로 학문의 이론과 응용 방법을 연구하고 교육하며 도덕적 품성과 전문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번영에 이바지함을 교육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② 본교의 교육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목표는 ‘통합적 상상력을 추구하는 창의교육’, ‘윤리적 판단을 고취하는 인문교육’, ‘현장 적합성을 높이는 실천적 전공교육’으로 한다. (개정 2022. 9. 1.)

제2장 조직

제1절 총장 · 교직원 등

제3조(총장) ① 총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본교를 대표한다.

② 총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연구부총장 · 대외국제부총장 · 교무처장 · 학생처장 · 기획처장 · 연구처장 · 입학처장 · 국제교류처장 · 대외협력처장 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2. 3. 1.), (개정 2024. 2. 29.)(개정 2024. 6. 1.)

③ 총장임용후보자의 선출은 공모제로 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조(부총장) ① 총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교육연구부총장과 대외국제부총장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2. 29.)(개정 2024. 6. 1.)

② 교육연구부총장은 교무, 학사, 학생, 기획, 입학 및 연구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2. 29.)(개정 2024. 6. 1.)

③ 대외국제부총장은 대외협력, 국제교류 및 지산학연협력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9. 1.), (개정 2024. 2. 29.), (개정 2025. 6. 27.)

제5조(전임교원) ① 전임교원은 교수·부교수 및 조교수로 구분하며, 학생을 교육·지도하고 학문을 연구하되, 필요한 경우 교육·지도·학문연구 또는 지산학연협력만을 전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9. 1.), (개정 2025. 6. 27.)

② 전임교원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학과(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속시설 등에 소속될 수 있다.

③ 총장은 필요한 경우 전임교원의 소속을 변경하거나, 겸임근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전임교원의 교수 시간은 매 학년도 30주를 기준으로 주당 9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전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 ① 행정직원 등 직원은 본교의 행정사무·

학사 및 그 밖의 사무를 담당한다.

② 조교는 교육·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한다.

③ 행정직원 등 직원과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④ 직원과 조교는 학교 정책 등에 관한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각각의 협의회(공무원, 대학회계직원, 조교)를 둘 수 있다.

⑤ 각 협의회는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겸임교원 등) ① 제5조에 따른 전임교원 외에 교육·연구 또는 지산학 연협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명예교수·석좌교수·겸임교원·초빙교원·객원교원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9. 1.), (개정 2025. 6. 27.)

② 겸임교원 등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강사)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원으로서 학생의 교육·지도를 담당하게 하는 강사를 둘 수 있다.

② 강사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연구원 등) ① 본교의 전문분야 연구업무 수행 또는 지원을 위하여 연구원 및 연구지원인력(이하 “연구원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연구원 등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육조직

제10조(단과대학)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단과대학을 둔다.

1. 공과대학

2. 정보통신대학

3. 에너지바이오대학

4. 조형대학
5. 인문사회대학
6. 기술경영융합대학
7. 미래융합대학
8. 창의융합대학
9. 교양대학 (개정 2022. 7. 1.)
10. 국제대학 (개정 2023. 2. 28.)

② (삭제 2022. 7. 1.)

③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부)와 전공은 별표 1과 같다.

④ 각 단과대학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1.)

제11조(대학원) ① 본교에 다음 각 호의 대학원을 둔다.

1. 일반대학원

2. 전문대학원

가. 철도전문대학원

나. IT정책전문대학원

다. 국방융합과학대학원 (개정 2024. 10. 18.)

라.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 (신설 2024. 10. 18.)

3. 특수대학원

가. 산업대학원

나. 주택도시대학원

②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전공, 프로그램)는 별표 2와 같다.

③ 각 대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학장·원장) ① 단과대학에 학장을, 대학원에 원장을 두며, 학장과 원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임한다.

② 학장과 원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해당 단과대학과 대학원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③ 학장은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공모제로 임명할 수 있으며, 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단과대학 학과(부)) ① 단과대학의 학과(부)에 학과(부)장을 두며, 학과(부)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임한다. 학과(부)에 전공(프로그램)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

② 학과(부)장은 소속 단과대학 학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부)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③ 학과(부)장은 내·외부 인사를 대상으로 공모제로 임명할 수 있으며, 공모제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 ① 대학원의 학과(전공·프로그램)에 주임교수를 두며,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임한다.

② 주임교수는 소속 대학원 원장의 명을 받아 해당 학과(전공·프로그램)의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하며, 학생을 지도·교육한다.

제15조(계약학과 등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본교에 학과·산업교육특별과정 또는 직업교육훈련과정(이하 “계약학과 등”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계약학과 등의 설치요건, 명칭,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학생의 선발

기준과 방법, 학생의 정원, 수업료와 운영경비, 학기와 수업일수, 설치·운영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행정조직 · 부속시설 등

제16조(행정조직) ① 본교에 교무처 · 학생처 · 기획처 · 연구처 · 입학처 · 국제교류처 · 대외협력처 및 사무국 등을 둔다. (개정 2022. 3. 1.), (개정 2024. 2. 29.)

② 각 처의 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임하고, 각 처에는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복수의 부처장 및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거나 교수 중에서 보한다. (개정 2024. 2. 29.)

③ 각 부서의 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교무처에 교무과와 학사지원과를, 학생처에 학생지원과를, 기획처에 기획조정과를, 입학처에 입학과를, 연구처에 연구산학과를, 사무국에 총무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각각 둔다. (개정 2024. 2. 29.)

⑤ 대학 및 대학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두되, 2개 이상의 대학 및 대학원 운영을 지원하는 통합행정실을 둘 수 있다.

⑥ 각 과장 및 행정실장은 4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5급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24. 2. 29.)

⑦ 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행정조직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⑧ 교무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행정조직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4. 9. 13.)

제17조(부속시설 등) ① 본교에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연구시설 및 부속시설(이하 “부속시설 등”이라 한다)을 두며, 부속시설 등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연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부속시설 등의 장 및 부부서장은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으로 둔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부속시설 등의 장은 총장 또는 부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교직원을 감독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 등(교육기본시설 및 지원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해당 시설의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존속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며, 평가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부속시설 등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8조(사무분장 등) 행정조직 및 부속시설 등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보직수행 등) 각 조직 및 보직자들의 업무수행, 위임전결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0조(산학협력단)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단(이하 “산학협력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산학협력단의 수입과 지출은 별도의 회계로 운영한다.

③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21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기업을 둘 수 있다.

② 학교기업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사업단) 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기관 및 산하기관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단을 둘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교무회의 · 각종 위원회

제23조(교무회의) ① 본교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무회의를 둔다.

② 교무회의는 총장 · 교육연구부총장 · 대외국제부총장 · 일반대학원장 · 학장 · 처장 · 사무국장 및 본부장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시설·부속시설의 장을 포함할 수 있고, 그 밖의 교직원을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개정 2024. 6. 1.)

③ 교무회의는 총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교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대학(원)·학과(부)·전공 및 부속시설 등의 설치·변경과 폐지에 관한 사항
2. 학칙 개정 및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3. 입학·수료·졸업 및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4. 고사·시험에 관한 사항
5. 학생지도·장학 및 복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교무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각종 위원회) ① 본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두며,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대학원위원회
2. 대학인사위원회
3. 성차별대책위원회
4.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5. 입학전형관리위원회
6. 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7. 교육과정위원회
8. 학점인정심의회
9. 등록금심의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위원회의 기능과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절 대학평의위원회 · 전체교수회 등

제25조(대학평의위원회) ① 「고등교육법」에 따라 본교의 주요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교원·직원·조교·학생으로 구성되는 대학평의위원회를 둔다.

② 대학평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자문사항으로 한다.

1. 대학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대학헌장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4.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
5.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총장 후보자 선출 절차에 관한 사항(개정 2023. 6. 1.)
7.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총장, 대학평의위원회 의장, 대학평의위원회 재직 평의원 4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사항(개정 2023. 6. 1.)

③ 대학평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전체교수회) ① 본교에 조교수 이상의 전임교원(교육공무원)으로 구성된 전체교수회를 둔다.

② 전체교수회의 의장은 총장이 되며,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장 권한대행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전체교수회는 대의기구로 교수평의회를 둔다. 교수평의회는 의장, 부의장, 사무처장 및 단과대학에서 선출한 평의원으로 구성된다.

- ④ 총장이 전체교수회를 소집하되, 재직 교수 3분의 1 이상 또는 교수평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 ⑤ 전체교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각 단과대학, 학과(부)의 설치·폐지·명칭 변경 및 모집정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되, 대학원은 제외한다)
 2. (삭제 2023. 6. 1.)
 3. 총장이 학교 운영에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4. 교수평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5. 그 밖의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 ⑥ 전체교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교수평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7절 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

- 제27조(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 ① 각 단과대학과 전문대학원의 운영과 발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과대학교수회와 전문대학원교수회를 각각 둔다.
- ② 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교육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의 의장은 학(원)장이 되며, 학(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학(원)장이 미리 지명한

학과(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8조(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의 소집과 심의) ① 학(원)장이 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를 소집하되, 재적 교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집하여야 한다.

② 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단과대학 또는 전문대학원의 관련 학칙과 모든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교수와 연구에 관한 사항
3.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입학(재입학·편입학 및 전과(부) 포함)·졸업 및 수료에 관한 사항
5. 시험에 관한 사항
6. 학생 지도와 상벌에 관한 사항
7.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총장, 학(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의 회의는 학(원)장, 학과(부)장과 전공(프로그램) 주임교수로 구성하는 학과(부)장회의(단과대학·전문대학원 교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④ 단과대학·전문대학원교수회의 회의는 재적인원(6개월 이상 장기 출장자 제외)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절 학위과정·학생정원

제29조(학위과정) ① 단과대학과 각 대학원에 다음 각 호의 학위과정을 둔다.

1. 단과대학: 학사학위과정
2.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3.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4.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② 단과대학에 학사학위와 석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③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에 석사학위와 박사학위의 과정이 통합된 과정을 둘 수 있다.

④ 대학원의 학위과정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1. 학과 또는 전공 외에 2개 이상의 학과 또는 전공이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협동과정(이하 “학과 간 협동과정”이라 한다)
2.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설치, 운영하는 학·연·산, 학·연 또는 학·산 협동과정(이하 “학·연·산 협동과정”이라 한다)

⑤ 대학원의 학위과정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공공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⑥ 대학원의 학위과정 외에 필요에 따라 연구과정을 둘 수 있으며, 연구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9조의2(박사학위과정 신설 연구실적 기준)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대학원에 박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확보하여야하는 교원 중 2분의 1 이상은 박사학위과정의 설치 학기 개시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다음 각 호의 연구 관련 실적을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연구 실적에 대한 인정범위와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부 고시에 따른다. (신설 2024. 2. 29.)

1. 인문사회계열: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 4편 이상
2. 자연과학·공학계열: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 6편 이상
3. 예·체능계열: 논문 또는 이에 준하는 연구실적 3편 이상

제30조(학생의 정원) ① 단과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4와 같으며, 대학원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② 학생의 정원 조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입학

제31조(입학 시기) ① 학사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 학년도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정원 외 편입학, 재입학, 순수외국인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할 수 있다.

② 대학원과정의 입학 시기는 매 학기 초 30일 이내로 한다.

③ 신입학 및 편입학의 1학기 입학일은 3월 1일로 본다.

제32조(입학생 선발) ① 본교의 입학생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정해진

입학전형 방법으로 선발한다.

②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입학허가와 등록) 입학은 전형절차를 마친 후에 총장이 허가하며, 입학이 허가된 사람은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34조(입학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람
2. 정해진 기일 내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제3절 수업

제35조(학년도 · 학기) ①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학교 운영상 필요한 경우 학기 개시일과 개강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학기는 매 학년도 2학기 이상으로 하되,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기는 교육상 필요한 경우 학과, 학년 또는 학위과정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하계·동계방학 기간에 계절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⑤ 하계방학 기간에 디스커버리학기를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수업방법) ① 수업은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 방송·정보통신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 9. 1.)

②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의 수업은 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야간에 수업을 할 수 있다.

③ 특수대학원의 수업은 야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주간에 수업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간수업, 야간수업 및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 9. 1.)

제37조(수강신청) ① 학생은 매 학기 수업시간표에 따라 학습할 교과목을 지도교수 등의 지도를 받아 지정된 기간에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

② 수강신청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8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학년도별 수업일수와 교과별 수업일수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년도별 수업일수는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정한다.

③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 학년도 2주 이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과별 수업일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업일수 이내로 정하되, 제51조제2항의 학점 당 필요한 이수시간의 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예비군 훈련에 따른 불리한 처우 금지) ①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훈련 기간 동안 출결, 성적처리 및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② 교과목 담당교원은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수업 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수업 보충 등 학생 학습권을 보장한다. (신설 2023. 9. 1.)

제39조(휴업일) ① 정기휴업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름방학

2. 겨울방학

3. 개교기념일

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② 비상재해,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임시휴업을 할 수 있다.

③ 휴업일의 변경과 임시휴업은 필요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④ 휴업일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강의 또는 실험·실습 등을 할 수 있다.

제40조(단과대학의 수업연한·재학연한) ① 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은 4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5년으로 한다.

②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수업연한은 6년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부의 건축학전공은 7년으로 한다.

③ 성적이 우수하여 졸업요건을 조기에 충족한 학생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수업연한을 1년 이내에서 줄일 수 있다.

④ 전과·재입학 및 편입학한 학생의 수업연한은 해당 학과(부)의 수업연한에서 이수한 학점에 따라 인정받은 학년(학기)을 제외한 기간으로 한다.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⑥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잔여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 6. 1.)

⑦ < 삭 제 > (삭제 2024. 6. 1.)

⑧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1조(대학원의 수업연한·재학연한) ① 대학원의 수업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년(4개 학기)

나. 박사학위과정: 2년(4개 학기)

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3년 6개월(7개 학기)(개정 2025. 1. 1.)

2. 전문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년(4개 학기). 다만, 무논문학위과정은 2년 6개월(5개 학기)

나. 박사학위과정: 2년 6개월(5개 학기)

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3년 6개월(7개 학기)

(개정 2025. 1. 1.)

3. 특수대학원(석사학위과정): 2년 6개월(5개 학기)

② 본교 입학 전에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취득한 학점의 인정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은 각각 6개월 이

내에서 수업연한을 줄일 수 있다.

③ 본교 입학 전에 본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이나 학점의 조기취득 등으로 수료학점이 충족될 경우에는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수업연한을 줄일 수 있다.

④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그 밖의 공공단체 등과의 협약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서 수업연한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과정에 등록한 계약학과 학생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

⑤ 재학연한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석박사 통합과정의 재학연한은 8년(16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문대학원의 박사학위과정의 재학연한은 6년(12개 학기)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1.)

⑥ 편입학 또는 재입학한 학생의 재학연한은 남은 수업연한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⑦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절 휴학·복학·자퇴·제적

제42조(휴학) ①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1선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질병, 임신·출산·육아, 창업 등으로 인한 휴학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신·편입생 및 재입학생의 경우 첫 학기는 휴학할 수 없다. 다만, 총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학할 수 있다.

③ 휴학기간은 1회에 2개 학기를 초과할 수 없으며, 휴학할 수 있는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총장이 인정하는 장애학생은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1. 학사학위과정: 6개 학기 이하
2.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10개 학기 이하
3. 석사학위과정: 4개 학기 이하
4. 박사학위과정: 4개 학기 이하
5.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6개 학기 이하

④ 그 밖에 휴학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3조(복학) ① 휴학한 학생은 휴학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사유가 종료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에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당 학년의 교과목 이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총장의 허가를 받아 복학할 수 있다.

제44조(자퇴)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은 학(원)장에게 자퇴원을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제적) ①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적한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학기 성적 반영 후 졸업요건을 충족하여 졸업이 가능한 학생은 제외한다.

1. 휴학기간 종료 후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아니한 학생
2.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에 등록을 마치지 아니한 학생
3. 재학연한을 초과한 학생

4. 연속 3회, 합산 4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5. 학사제적 후 재입학하여 합산 2회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
 6. 이중학적을 보유한 학생
 7. 사망, 질병 등 기타 사유로 학업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개정 2023. 2. 28.)

② 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최종 등록일 10일전까지 제적 예고를 하고, 최종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적 처리한다. (개정 2023. 2. 28.)

제4장 대학 학사운영

제1절 입학·편입학·재입학

제46조(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제47조(모집단위와 학생선발) ① 모집단위별 신입생의 선발은 단과대학·학과군·학부(전공) 또는 학과 단위로 할 수 있다. 신입생을 단과대학·학과군 단위로 선발할 경우에는 전공학과 또는 학부(전공)가 결정될 때까지 단과대학·학과군 단위로 운영하며, 전공학과와 학부(전공)는 제2학년 진급시에 결정하되,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제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원은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의 범위 내에서 보충할 수 있다.

제48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정원 내 편입학과 정원 외 편입학으로 구분한

다.

② 정원 내 편입학은 3학년을 원칙으로 하며, 다른 학교에서 2학년 이상 수료한 사람,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학년도 모집단위별 여석이 있는 경우에 선발할 수 있다.

③ 정원 외 편입학의 지원 자격과 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다.

④ 편입학자가 전적 학교에서 이미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9조(재입학) ① 자퇴 또는 제적된 사람이 재입학을 원할 경우에는 총정원의 범위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제88조에 따라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에 따라 재입학을 허용할 때에는 정원의 여석에 관계없이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 허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0조(시간제등록생의 선발) ① 시간제로 등록하여 수업을 받는 사람(이하 “시간제등록생”이라 한다)은 매 학기 선발할 수 있다.(개정 2024. 6. 1.)

② 시간제등록생의 입학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③ 시간제등록생은 대학의 학생과 통합하여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과 시간제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등록생으로 선

발하며, 등록인원은 총 입학정원의 100분의 10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6. 1.)

④ 시간제등록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고 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

⑤ 시간제등록생의 선발방법, 교육과정, 수업방법, 교과별 수업일수, 등록학점, 학위의 종류 및 학위수여절차 등 시간제 등록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6. 1.)

제2절 교육과정

제51조(이수단위) ① 교과의 이수단위는 학점으로 한다.

② 1학점 이수단위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론 교과목은 15시간 이상의 수업

2. 실험·실습·실기·체육 및 봉사활동은 30시간 이상의 수업

제52조(교육과정의 운영) ① 교육과정은 교양과목·전공과목·기초필수·교직과목 및 일반선택과목으로 구분하며, 교양과목과 전공과목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23. 9. 1.)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3조(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①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군사교육단을 둔다.

②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4조(전공의 이수) ① 학생은 소속한 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1. 다른 학과(부) · 전공에서 제공하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2. 둘 이상의 학과(부)·전공이 융합하여 기존의 교과목을 연계하거나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새로운 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연계융합전공
3. 학생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승인을 받는 학생설계전공
4. 학과 내 또는 학과 간 연계하여 미래사회 및 산업 수요 변화를 대비하여 구성한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개정 2022. 9. 1.)
5. 디스커버리학기에 개설한 실용 중심의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프락시스 디그리 과정 (개정 2022. 9. 1.)

② 제1항에 따른 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5조(전과(부)) ① 총장은 학생이 전과를 희망하거나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전과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

② 전과(부)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6조(인증 프로그램의 설치 · 운영) ① 각 학과(부)는 외부공인기관의 인증기준을 충족하는 프로그램(교육과정)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② 인증 프로그램(교육과정)의 설치·운영 및 이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7조(본교의 정규수업 이외 이수학점의 인정) ① 본교의 정규수업 이외

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수학점은 각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본교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 (개정 2023. 9. 1.)

1. 국내외의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 이내(개정 2023. 9. 1.)

가. 제58조에 따라 공동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정하는 학점인정의 범위

나. 가목 외의 경우: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2. 「병역법」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취득한 학점: 학기당 6학점 이내, 연 12학점 이내(개정 2023. 9. 1.)

3. 입학 전에 국내외의 고등학교와 대학 등에서 대학 교육과정에 상당하는 교과목을 이수하고 취득한 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 이내 (개정 2022. 7. 1.), (개정 2023. 9. 1.)

4.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 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한 학점: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 (개정 2023. 9. 1.)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각 목,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중복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점인정범위가 가장 큰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4. 9. 13.)

③ 제1항에 따른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8조(국내외 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각 학과(부)는 국내외 대학

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학사학위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과의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59조(학위과정의 연계 운영) ① 학사학위과정과 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학위과정의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0조(우수외국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학생을 선발하여 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성적평가

제61조(시험) ① 교과목별로 성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기시험과 수시시험을 실시한다.

②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정기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시험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2조(성적) ① 성적은 시험·과제·출석상황 및 학습태도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등급	평점
A+	4.5	C+	2.5
A0	4.0	C0	2.0
B+	3.5	D+	1.5
B0	3.0	D0	1.0
		F	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S”(Satisfactory, 합격)와 “U”(Unsatisfactory, 불합격)로 평가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교과목별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D0 이상 또는 S등급을 받으면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성적평가에 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3조(학사경고) ① 한 학기 성적 평점평균이 1.75 미만인 학생에게 학사경고를 부과한다. 다만, 졸업요건을 충족한 졸업예정자는 학사경고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9. 1.)

② 학사경고를 받은 학생에게는 소속 학과(부)장 또는 지도교수가 수강신청 학점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수료·졸업

제64조(학년수료학점) ① 학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학년 수료: 33학점 이상
2. 2학년 수료: 65학점 이상
3. 3학년 수료: 98학점 이상
4. 4학년 수료: 130학점 이상

5. 5학년 수료: 160학점 이상

6.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학사 4년제) 수료: 154학점 이상(전문대학원 157학점)

7.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학사 5년제) 수료: 184학점 이상(전문대학원 187학점)

② 해당 학년까지 정해진 등록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는 학년 수료를 인정한다.

제65조(졸업학점) ① 졸업에 필요한 취득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 130학점 이상(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160학점 이상)

2. 편입생: 65학점 이상(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95학점 이상)

② 졸업에 필요한 교양 및 전공학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생은 각 인증 프로그램에서 정한 기준을 따로 충족하여야 한다.

제66조(졸업자격인증) ① 학생은 제65조에서 정한 졸업학점 이외에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졸업자격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는 졸업자격인증 의무를 제외할 수 있다.

1. 미래융합대학 및 계약학과 학생

2. 장애학생이나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졸업자격인증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7조(졸업과 학위수여 등) ①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입생은 8개 학기 이상, 편입생은 4개 학기 이상 이수(다만, 건축학 부 건축학전공 신입생은 10개 학기, 편입생은 6개 학기 이상 이수)(개정 2024. 6. 1.)

2. 제65조제1항에 따른 졸업학점 이상 취득

3. 제6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기준 충족

4. 제66조에 따른 졸업자격인증 취득

②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학생에게는 졸업을 인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위를 수여하며, 대학 학위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③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한 학생이라도 졸업자격인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④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받은 경우에는 교무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7.)

⑤ 그 밖에 졸업, 학위수여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8조(학사학위취득 유예) ① 제67조의 졸업요건을 갖춘 자가 학사학위 취득의 연기를 원하는 경우 재학연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년 (2개 학기)까지 학사학위 취득을 유예할 수 있다.

② 학사학위 취득 유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69조(조기졸업) ① 제65조 및 제66조를 충족한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1. 신입생: 6개 학기 또는 7개 학기 이수(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8개 학기 또는 9개 학기)하고, 전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 4.0이상 취득한 학생
 2. 편입생: 3개 학기 이수(단,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5개 학기)하고, 교과목 이수성적 평점평균 4.0이상 취득한 학생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학기에 계절학기 및 디스커버리학기는 이수학기로 포함하지 않는다.

제5장 대학원 학사운영

제1절 입학 · 편입학

제70조(입학자격) ①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1. 학사학위 취득자
2. 법령에 따라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②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의 입학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입학전형에 합격한 사람이어야 한다.

1. 석사학위 취득자
2. 법령에 따라 제1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제71조(편입학) ① 편입학은 입학정원에 여석이 있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

② 편입학자의 전적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의 인정범위와 방법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교육과정

제72조(교육과정) ① 교육과정은 공통필수과목, 공통선택과목, 전공필수과목 및 전공선택과목으로 구분한다.

②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2조의2(전공의 이수) ① 대학원생은 소속한 전공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전공을 이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2. 29.)

1. 다른 학과(전공)에서 제공하는 부전공이나 복수전공
2. 둘 이상의 학과(전공)가 융합하여 기존의 교과목을 연계하거나 교과목을 추가로 개설하여 새로운 융합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연계융합전공
3. 학과 내 또는 학과 간 연계하여 미래사회 및 산업 수요 변화를 대비하여 구성한 교육과정을 학습하는 마이크로디그리 과정
4. 일반대학원의 경우 학과(전공)에서 지정한 학석사 공통교과목에 해당하는 학부 전공(신설 2025. 1. 1.)

② 제1항에 따른 전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 2. 29.)

제73조(국내외 대학원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① 각 학과(전공, 프로그램)는 국내외 대학원과의 학술교류 협정에 따라 석사 및 박사학위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석사 및 박사학위 교육과정을 마친 학생에게는 복수학위 또는 공동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국내외 대학원과의 복수학위 및 공동학위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4조(전과) ① 전과는 동일 계열 내에서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전과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5조(이수학점의 인정) ① 학생이 재학 중 국내외 다른 대학원(본교 다른 대학원 포함)에서 학점을 이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수강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학생이 입학 이전에 국내외 다른 대학원(본교 다른 대학원 포함)의 동일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학생이 「고등교육법」에 따라 국내외의 다른 학교·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는 학점인정심의회(의)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④ 학사학위과정 4학년 재학생 중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대학원 교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득한 학점은 학사과정의 졸업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석사학위과정의 같은 학과에 진학한 경우 석사학위과정 이수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일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학생 및 석박사통합과정 4학기 이하 학생

은 학석사 공통교과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강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 1. 1.)

⑥ 이수학점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성적평가·수료·학위수여

제76조(성적) ① 학업 성적의 등급과 평점은 다음과 같다.

등급	평점
A+	4.5
A0	4.0
B+	3.5
B0	3.0
C+	2.5
C0	2.0
F	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정하는 교과목에 대해서는 “S”(Satisfactory, 합격)와 “U”(Unsatisfactory, 불합격)로 평가하며, 평점은 부여하지 아니한다.

③ 교과목별로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고 C0 이상 또는 S등급을 받으면 취득 학점으로 인정한다.

④ 성적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7조(수료학점)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4학점 이상

나.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54학점 이상

(개정 2025. 1. 1.)

2. 전문대학원

가. 석사학위과정: 27학점 이상(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나. 박사학위과정: 36학점 이상

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 54학점 이상

(개정 2025. 1. 1.)

3.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 27학점 이상(무논문학위과정 30학점 이상)

② 비동일계열 전공 출신 학생은 학과에서 필요할 경우 지정하는 선 이수과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학사학위과정이나 석사학위과정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수한 학점은 수료에 필요한 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

제78조(수료시기 및 수료증서 수여) ① 대학원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 말로 한다.

②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학술헌위(별지 제4호서식), 전문학위(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서를 수여한다.

제79조(수료 후 등록) ①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논문 준비 등을 위한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대학원 영구수료자(논문 제출시한 경과자) 중에서 학위 취득을 원하는 사람은 별도의 승인 절차를 거쳐 등록을 한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0조(학위수여) ① 학위는 석사·박사 및 명예박사로 한다.

② 대학원 학위과정을 수료하고, 각 대학원별로 정한 학위수여 기준(학위논문심사 합격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학위를 수여한다.

1. 일반대학원: 학술학위

2. 전문대학원 · 특수대학원: 전문학위(다만,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문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학위 수여 가능)

③ 제2항에 따른 학위수여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학위증서를 발급한다.

1. 학술학위: 별지 제6호서식의 학위기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학위기

2. 전문학위: 별지 제7호서식의 학위기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영문학위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문대학원과 특수대학원은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학생에게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⑤ 석사학위과정과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퇴학한 학생이 석사학위 수여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는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⑥ 각 대학원별 학위 종류는 별표 6, 별표 7, 별표 8과 같다.

⑦ 학위수여 기준 등 학위수여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1조(명예박사학위의 수여) ① 학술·문화·사회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대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사람에게는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② 명예박사학위 수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2조(학위수여 취소)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해당 학위를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로 받은 경우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위수여를 취

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9.)

제6장 학생

제1절 학생활동

제83조(학생의 의무) 학생은 학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육목표에 부합하도록 행동하여야 한다.

제84조(총학생회) ① 학생은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건전한 학풍을 조성하며 창의적인 학구능력 배양과 민주적 사고에 입각한 학생자치활동을 실현하기 위하여 총학생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5조(학생활동 등) ① 대학은 건전하고 책임감 있는 학생활동을 통해 학생이 자율적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생활동을 지원 및 지도한다.

② 학생활동 및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절 장학·상벌

제86조(장학금 등) ① 학생에게는 장학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학금 등의 종류 및 지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7조(포상) ①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② 포상의 종류와 대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8조(징계) ① 학생이 학칙 등을 위반하거나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② 징계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7장 등록금

제89조(등록금) ① 학생은 매 학기 지정된 등록일까지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이 등록금의 분납 또는 납부 연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총장은 등록금에 대하여 분납 또는 연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주간은 학기 단위로, 야간은 학점 단위로 정한다.

③ 납입기일과 등록금액은 해당 학년도 및 학기 개시 전에 총장이 공고한다.

④ 등록금은 결석 또는 정학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⑤ 등록금의 반환 등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90조(등록금의 면제) 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학생 또는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 또는 감액할 수 있다.

② 등록금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공개강좌 · 자체평가

제91조(공개강좌) ① 본교에 학생 이외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강좌

를 둘 수 있다.

② 공개강좌의 개설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2조(자체평가) ①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교육·연구 등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한다.

② 자체평가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9장 보칙

제93조(학칙개정) ①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장이 발의하고, 교무회의·전체교수회의 심의를 마친 후 총장이 확정·공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칙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칙 개정(안)을 5일 이상 교내 전산망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94조(시행세칙)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제635호, 2021. 10.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은 2022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1조,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6, 별표 7, 별표 8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졸업시까지 그에 해당하는 종전에 학칙을 적용하고, 나노IT디자인융합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IT디자인융합학과 소속의 교직원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각각 융합과학대학원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IT정책전문대학원 IT디자인융합전공의 교직원으로 본다.

제4조(산업대학원 식품공학과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산업대학원 식품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졸업시까지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5조(학과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지식재산기술경영학과, 융합과학대학원 신에너지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과 소속 교직원은 2022학년도 1학기부터 각각 일반대학원 AI경영학과,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재적생과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제6조(졸업자격인증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제66조 및 제67조제1항제4호는 2021학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고, 편입생의 경우 2023학년도 편입생부터 적용하되, 그 이전 입학생(편입생 포함)은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7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4조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106조 중 “제6조의제2항”을 “제8조”로 한다.

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년트랙 기금교원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조제4항”을 “제5조제5항”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③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조의제2항”을 “제8조”로 한다.

④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0조”를 “제23조”로 한다.

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중 “제4조”를 “제5조”로 한다.

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호 중 “제29조제1항”을 “제23조제2항”으로 한다.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장학금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09조”를 “제86조”로 한다.

⑧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진로상담센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5조”를 “제92조”로 한다.

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구조개편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제45조”를 각각 “제30조”로 한다.

제3조 중 “제44조”를 “제29조”로 한다.

⑪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계약학과 등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3조”를 “제15조”로 한다.

⑫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소 등 설립 및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제18조제2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구원 인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조”를 “제9조”로 한다.

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혁신처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⑮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연계융합·학생설계 전공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69조의2”를 “제54조”로 한다.

⑯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예규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17조”를 “제94조”로 한다.

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기초교육학부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제4항”을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⑱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8조제1항 및 제4항”을 “제10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15조 중 “제72조의4”를 “제57조”로 한다.

제25조 중 “제51조제1항”을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제111조”를 “제88조”로 한다.

제39조의2제1항 중 “제57조”를 “제42조”로 한다.

제39조의2제2항 중 “제8조제4항”을 “제10조제4항”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제79조”를 “제64조”로 한다.

⑲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사학위과정과 석사학위과정의 연계과정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74조제2항”을 “제59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94조”를 “제77조”로 한다.

⑳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공개강좌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중 “제114조”를 각각 “제91조”로 한다.

㉑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수료후 등록생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별지 서식 중 “제96조제1항”을 각각 “제79조제1항”으로 한다.

㉒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영구수료 등록생 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96조제2항”을 “제79조제2항”으로 한다.

㉓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보전산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를 “제17조”로 한다.

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취업본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의1항”을 “제17조제1항”로 한다.

㉕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18조3항”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㉖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40조”를 “제25조”로 한다.

㉗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평의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 중 “제41조제5항”을 “제26조제7항”으로 한다.

제8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학칙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학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인용된 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이 이 학칙에 있을 때에는 이 학칙의 규정을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제658호, 2022. 1. 1.)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668호, 2022. 3.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6, 별표 7 중 일반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에 관한 사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및 별표 6 중 일반대학원 인공지능응용학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일반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폐지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폐지되는 일반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일반대학원 국방방호공학과 소속의 교직원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융합과학대학원 국방과학융합학과의 교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2. 7. 1.)

부칙(제692호, 2022. 7.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미래융합대학, 별표 4, 별표 5는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별표 2, 별표 7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되는 학부(과) 등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미래융합대학 융합공학부 및 융합사회학부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22학년도까지 총장이 정한 바에 따라 미래융합대학 소속 전공으로 배정하고, 미래융합대학 융합기계공학전공, 건설환경융합전공, 헬스피트니스전공, 문화예술전공, 영어전공, 벤처경영전공에 재적하고 있거나 배정된 학생은 2023학년도부터 각각 미래융합대학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헬스피트니스학과, 문화예술학과, 영어과, 벤처경영학과로 재적생으로 본다. 에너지바이오대학 환경공학과 환경공학전공 및 환경정책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졸업할 때까지 종전의 학과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대학 전자IT미디어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2023학년도 이후 학생 희망에 따라 전자공학과 또는 스마트ICT융합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자IT미디어공학과 전자공학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전자공학과로, 전자IT미디어공학과 IT미디어공학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스마트ICT융합공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전자IT미디어공학과는 2029학년도까지 존속하며, 존속 기간이 지난 후의 재적생은 전자공학과 또는 스마트ICT융합공학과로 재적생으로 소속을 변경해야 한다. 단, 전자IT미디어공

학과 전자공학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전자공학과로, 전자IT미디어공학과 IT미디어공학프로그램 소속 학생은 스마트ICT융합공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되는 학부(과) 등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기초교육학부의 소속 교직원은 학칙을 공포한 날로부터 교양대학의 소속 교직원으로, 미래융합대학 융합기계공학전공, 건설환경융합전공, 헬스피트니스전공, 문화예술전공, 영어전공, 벤처경영전공의 소속 교직원은 2023학년도부터 각각 미래융합대학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헬스피트니스학과, 문화예술학과, 영어과, 벤처경영학과 의 소속 교직원으로, 전자IT미디어공학과 전자공학프로그램, IT미디어공학프로그램 소속의 교직원은 2023학년도부터 각각 전자공학과, 스마트 ICT융합공학과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부칙(제703호, 2022. 9.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7, 별표 8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산업대학원 공예문화디자인학과 학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되는 산업대학원 공예문화디자인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폐지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제728호, 2023. 1.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6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과의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스마트에너지시스템공학과, 신재생에너지융합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폐지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일반대학원 IT미디어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스마트ICT융합공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제739호, 2023. 2. 2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6, 별표 7 중 일반대학원 식품공학과 및 에너지기술·정책학과, 융합과학대학원 국방과학융합학과의 명칭 변경과 융합과학대학원 국방과학융합학부 및 국방ICT융합공학과 신설에 관한 사항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일반대학원 식품공학과, 에너지기술·정책학과, 융합과학대학원 국방과학융합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각각 일반대학원 식품생명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융합과학대학원 국방방호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

시 일반대학원 식품공학과, 에너지기술·정책학과, 융합과학대학원 국방과
학융합학과 소속의 교직원은 2023학년도 2학기부터 각각 일반대학원 식
품생명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융합과학대학원 국방방호학과의 교
직원으로 본다.

부칙(제750호, 2023. 6.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4,
별표 5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하고, 별표 2는 2023학년도 1학기부
터 적용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식품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식품생명공
학과의 재적생으로 본다.

제3조(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
시 식품공학과 소속의 교직원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식품생명공학과
의 교직원으로 본다.

부칙(제761호, 2023. 9.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6,
별표 7에서 입학정원 조정과 학과 폐지 및 박사과정 신설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과의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의공학-바이오소재융합협동과정 및 인문경영학과, 융합과학

대학원 에너지환경공학과 및 에너지화학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폐지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부칙(제779호, 2024. 1.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는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부칙(제782호, 2024. 2. 29.)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8 중 산업대학원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학과 명칭 변경에 관한 사항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되는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전에 산업대학원 글로벌프로젝트매니지먼트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산업대학원 해외건설공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부칙(제800호, 2024. 6.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별표 8은 2024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례) 별표 1,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공무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1] 교원업적평가 영역별 평가표의 제3호 봉사업적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③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개선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④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발전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공간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연구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위임전결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별표 2 중 교무처 교무과, 교무처 학사지원과, 학생처 학생지원과, 장애학생지원센터, 학생상담센터, 기획처, 연구처, 입학처 입학과, 교육혁신원, 도서관, 정보전산원, 생활관, 공동실험실습관, 재난안전관리본부, 취업진로본부, 현장실습지원센터, 미술관, 인권센터, ST나눔공헌단의 전결권자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⑦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자체평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⑧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LINC 3.0)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⑨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술관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⑩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일반징계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⑪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캠퍼스환경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교육기획부총장”을 “교육연구부총장”으로 한다.

부칙(제813호, 2024. 9. 13.)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814호, 2024. 10. 18.)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되는 학과의 학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학칙 개정으로 폐지되는 일반대학원 나노바이오융합공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에게는 졸업 시까지 폐지되는 종전의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및 학과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철도전기·신호공학

과, 철도건설공학과, 철도안전공학과, 철도경영정책학과에 재적 중인 학생은 종전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2025학년도 이후 학생 희망에 따라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및 철도전기·신호공학과 학생은 철도시스템공학과로, 철도건설공학과, 철도안전공학과 및 철도경영정책학과 학생은 철도건설·정책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기술융합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및 에너지정책학과,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국방과학융합학부 국방방호학과 및 국방ICT융합공학과에 재적하고 있는 학생은 2025학년도부터 각각 국방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기술융합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및 에너지정책학과,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국방방호학과 및 국방ICT융합공학과에 재적생으로 본다.

제4조(명칭이 변경되는 대학원 및 학과의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전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및 철도전기·신호공학과 소속 교직원은 2025학년도부터 철도시스템공학과에 교직원으로,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건설공학과, 철도안전공학과 및 철도경영정책학과 소속 교직원은 2025학년도부터 철도건설·정책학과에 교직원으로 본다.

② 이 학칙 시행 전에 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기술융합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및 에너지정책학과,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국방과학융합학부 국방방호학과 및 국방ICT융합공학과에 소속 교직원은 2025학년도부터 각각 국방융합과학대학원 에너지기술융합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및 에너지정책학과,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국방방호학과 및 국방ICT융합공학과에 교직원으로 본다.

부칙(제822호, 2025. 1. 1, 2025. 3.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대학원의 수업연한), 제72조2의제1항제4호(전공의 이수), 제75조제5항(이수학점의 인정) 및 제77조제1항(수료학점)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 중 AI·미디어학과, 글로벌IT컨버전스학과 학과 신설 관련 부분은 202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학원의 수업연한 및 수료학점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대학원의 수업연한), 제77조제1항(수료학점)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34호, 2025. 3. 1.)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제대학 학과(부) 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국제대학 글로벌한국어문화학부로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부 및 전공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2026학년도 이후 학생 희망에 따라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글로벌한국어문화학부 소속의 교직원은 2026학년도 1학기부터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의 교직원으로 본다.

부 칙(제852호, 2025. 6. 27.)

제1조(시행일)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4,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26학년도부터 적용한다.

제2조(명칭이 변경되는 학부(과) 등의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학칙 시행 당시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과에 재적하는 것으로 보고, 2026학년도 이후 학생 희망에 따라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과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 또는 기계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학칙 시행 당시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프로그램의 소속 학생은 각각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으로,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정보공학프로그램 및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의 소속 학생은 기계공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이 학칙 시행 당시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와의 재적생 중 프로그램을 선택하지 않은 학생이 소속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는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또는 기계공학과로, 기계·자동차공학과는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 또는 기계공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와 기계·자동차공학과는 2032학년도까지 존속하며, 2025학년도 자유전공학부(공과대학)으로 입학한 학생은 존속 대상에서 제외한다. 존속 기간이 지난 후의 재적생은 기계시스템공학부 또는

기계공학과와 재적생으로 소속을 변경해야 하며,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프로그램의 소속 학생은 각각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으로,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정보공학프로그램 및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의 소속 학생은 기계공학과로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명칭이 변경되는 학부(과) 등의 소속 교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학칙 시행 당시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설계자동화공학프로그램, 기계·자동차공학과 자동차공학프로그램의 소속 교직원은 2026학년도부터 각각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기계시스템공학부 미래자동차전공의 소속 교직원으로,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기계정보공학프로그램 및 기계·자동차공학과 기계공학프로그램의 소속 교직원은 2026학년도부터 기계공학과 소속 교직원으로 본다.

제4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무회의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8호 중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창업지원단장”을 “창업지원단장”으로 한다.

②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임교원의 책임강의시간 및 강사료 지급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보직교원별 책임강의 시간 중 보직명(대상직위) 현황표에서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단장,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을 “인공지능혁신융합대학사업단장”으로 한다.

[별표 1] (개정 2022. 7. 1., 2023. 2. 28., 2023. 6. 1., 2024. 6. 1., 2025. 1. 1., 2025. 3. 1., 2025. 6. 27.)

대학에 설치하는 학과(부)와 전공(제10조제3항 관련)

단과대학	학과(부)와 전공
공과대학	기계시스템공학부(지능형로봇전공, 미래자동차전공),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신소재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건축학전공), 자유전공학부(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전기정보공학과, 전자공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컴퓨터공학과, 자유전공학부(정보통신대학)
에너지바이오대학	화공생명공학과, 환경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정밀화학과, 안경광학과, 스포츠과학과, 바이오메디컬학과, 자유전공학부(에너지바이오대학)
조형대학	디자인학과(산업디자인전공, 시각디자인전공),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인문사회대학	행정학과, 영어영문학과, 문예창작학과,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대학)
기술경영융합대학	산업공학과(산업정보시스템전공, ITM전공), MSDE학과, 경영학과(경영학전공,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자유전공학부(기술경영융합대학)
미래융합대학	융합기계공학과, 건설환경융합공학과, 헬스피트니스학과, 문화예술학과, 영어과, 벤처경영학과, 정보통신융합공학과, 자유전공학부(미래융합대학)
창의융합대학	인공지능융용학과,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자유전공학부(창의융합대학)
교양대학	인문사회교양학부, 자연과학부, 융합교양학부, ST자유전공학부
국제대학	글로벌기초교육학부, 글로벌자유전공학부,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 AI·미디어학과, 글로벌IT컨버전스학과

※ 국제대학의 학과(부)는 정원의 외국인유학생 전담학과(부)임

※ 정보통신융합공학과는 정원의 재직자, 성인학습자 전담학과임

※ 교양대학은 ST자유전공학부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전공 진입 전까지의 학사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7개 단과대별 모집단위[자유전공학부(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정보통신대학), 자유전공학부(에너지바이오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대학), 자유전공학부(기술경영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미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창의융합대학)]에 입학한 학생에 대한 학사관리업무는 총장이 따로 정함

※ 글로벌자유전공학부는 글로벌자유전공학부 내 6개 계열별 모집단위(공과계열, 정보통신계열, 에너지바이오계열, 디자인계열, 인문사회계열, 컴퓨터공학계열)에 입학한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전공 진입 전까지의 학사관리업무를 총괄함

[별표 2] (제11조제2항 및 제30조제1항 관련) (개정 2022. 3. 1.), (개정 2022. 7. 1.), (개정 2022. 9. 1.),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28.), (개정 2023. 6. 1.), (개정 2023. 9. 1.), (개정 2024. 1. 1.), (개정 2024. 2. 29.), (개정 2024. 6. 1.), (개정 2024. 10. 18.), (개정 2025. 3. 1.)

대학원에 설치하는 학과 및 입학정원

대학원별	과정	학과(전공, 프로그램)	입학정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기계설계로봇공학과 ¹⁾	451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²⁾	
		신소재공학과 ³⁾	
		자동차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과	
		전기정보공학과 ⁴⁾	
		전자공학과 ⁵⁾	
		컴퓨터공학과 ⁶⁾	
		스마트ICT융합공학과 ⁷⁾	
		화공생명공학과 ⁸⁾	
		환경공학과 ⁹⁾	
		식품생명공학과	
		정밀화학과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과(조형예술전공, 예술이론전공)	
		경영학과	
		TESOL학과	
		문예창작학과	
		안경광학과	
		스포츠과학과	
		MSDE학과 ¹⁰⁾	
		IT융합공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¹¹⁾	
		지능형반도체공학과 ¹²⁾	
		미래에너지융합학과 ¹³⁾	
		스마트시티공학과 ¹⁴⁾	
		<협동과정>	
		AI경영학과 (참여학과 : 경영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학연과정>	
		기계정보공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신소재공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대학원별	과정	학과(전공, 프로그램)	입학정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화공생명공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MSDE학과(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인공지능응용학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박사과정	기계설계로봇공학과 ¹⁾	153
		기계공학과	
		안전공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자동차공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건축과	
		전기정보공학과 ⁴⁾	
		전자공학과	
		컴퓨터공학과 ⁶⁾	
		정밀화학과	
		안경광학과	
		IT융합공학과	
		데이터사이언스학과 ²⁾	
		신소재공학과 ³⁾	
		환경공학과 ⁹⁾	
		화공생명공학과 ⁸⁾	
		산업디자인학과	
		시각디자인학과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과(예술이론전공)	
		문예창작학과	
		스마트ICT융합공학과	
		식품생명공학과	
		MSDE학과 ¹⁰⁾	
		스마트시티공학과 ¹⁴⁾	
		인공지능응용학과 ¹¹⁾	
		지능형반도체공학과	
		미래에너지융합학과 ¹³⁾	
		경영학과	
		<학연과정>	
		인공지능응용학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	
		신소재공학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철도전문 대학원	석사과정	철도시스템공학과 철도건설·정책학과	30
	박사과정	철도시스템공학과 철도건설·정책학과	20
IT정책전문 대학원	석사과정	AI공공정책전공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디지털문화정책전공	19

대학원별	과정	학과(전공, 프로그램)	입학정원
		IT디자인융합전공	28
	박사과정	AI공공정책전공 산업정보시스템전공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디지털문화정책전공 IT디자인융합전공	
국방융합과학 대학원	석사과정	<에너지기술융합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정책학과	17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국방방호학과 국방ICT융합공학과 국방로봇·AI공학과 국방경영·안전공학과	
	박사과정	<에너지기술융합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정책학과	21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국방방호학과 국방ICT융합공학과 국방경영·안전공학과	
SeoulTech- KIRAMS 의과학대학원	석사과정	방사선의과학전공 의생명과학전공	14
	박사과정	방사선의과학전공 의생명과학전공	5
산업대학원	석사과정	글로벌안전공학과 해외건설공학과 생산기술융합공학과 기술창업MBA학과 빅데이터AI경영정보학과 건설시스템공학과	40
주택도시 대학원	석사과정	건축환경·설비공학과 건축공학과 건축학과 도시부동산개발학과	38

※ 대학원 첨단분야 증원 정원 관리

- 1) 기계설계로봇공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3명(석2, 박1)
- 2) 데이터사이언스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7명(석6, 박1)
- 3) 신소재공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5명(석4, 박1), ' 24. 교원확보율 정원 13명(석6, 박7)
- 4) 전기정보공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3명(석2, 박1), ' 24. 교원확보율 정원 7명(석5, 박2)
- 5) 전자공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2명(석2)
- 6) 컴퓨터공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4명(석3, 박1)
- 7) 스마트ICT융합공학과 : ' 24. 교원확보율 정원 2명(석2)
- 8) 화공생명공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5명(석4, 박1)
- 9) 환경공학과 : ' 24. 교원확보율 정원 7명(석4, 박3)
- 10) MSDE학과 : ' 24. 교원확보율 정원 4명(석3, 박1)
- 11) 인공지능융합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5명(석4, 박1), ' 24. 교원확보율 정원 16명(석12, 박4)
- 12) 지능형반도체공학과 : ' 23. 결손인원 정원 2명(석2), ' 24. 교원확보율 정원 12명(석12)
- 13) 미래에너지융합학과 : ' 24. 교원확보율 정원 8명(석5, 박3)
- 14) 스마트시티공학과 : ' 21. 상호조정(석-10 → 박5), ' 24. 교원확보율 정원 6명(석4, 박2)

※ SeoulTech-KIRAMS 의과학대학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 Technology, SeoulTech)-한국원자력의학원(Korea Institute of Radiological & Medical Sciences, KIRAMS) 의과학대학원을 말함

[별표 3] (개정 2022. 3. 1., 2022. 9. 1., 2024. 1. 1., 2024. 2. 29., 2025. 3. 1., 2025. 6. 27.)

부속시설 등(제17조제1항 관련)

소속	시설명
교육기본시설 (2개)	도서관, 정보전산원
지원시설 (6개)	홍보실, 생활관, 공동실험실습관, 기록관, 재난안전관리본부, 대학원혁신본부
부속시설 (22개)	교육혁신원(교수학습개발센터, 교양교육연구센터), 신문방송사, 창업지원단(창업보육센터, 창업교육센터, 예비창업패키지사업센터, 초기창업패키지사업센터, 글로벌협업프로그램사업센터, 메이커스페이스 구축운영사업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 미술관, 인권센터, ST나눔공헌단, 평생교육원(철도아카데미), 학생상담센터, 취업진로본부(현장실습지원센터), 출판문화원, RISE사업단

※ () 안의 부서는 부속시설인 동시에 타 부속시설의 소속시설임

[별표 4] (개정 2022. 7. 1., 2023. 6. 1., 2024. 6. 1., 2025. 6. 27.)

단과대학의 모집단위별 입학정원(제30조제1항 관련)

단과대학	모집단위	2024학년도 입학정원			2025학년도 입학정원			2026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공과대학	기계시스템디자인공학과	188		188	147		147			
	기계·자동차공학과	171		171	134		134			
	기계시스템공학부							133		133
	지능형로봇전공							85		85
	미래자동차전공							48		48
	기계공학과							128		128
	안전공학과	63		63	50		50	50		50
	신소재공학과	78		78	63		63	63		63
	건설시스템공학과	119		119	93		93	95		95
	건축학부	128		128	103		103	101		101
	건축공학전공	73		73	59		59	58		58
	건축학전공	55		55	44		44	43		43
	자유전공학부(공과대학)				73		73	69		69
정보통신대학	전기정보공학과	140		140	103		103	103		103
	전자공학과	89		89	63		63	60		60
	스마트ICT융합공학과	55		55	41		41	42		42
	컴퓨터공학과	71		71	53		53	85		85
	자유전공학부(정보통신대학)				35		35	28		28
에너지바이오대학	화공생명공학과	71		71	56		56	55		55
	환경공학과	47		47	41		41	69		69
	식품생명공학과	44		44	39		39	37		37
	정밀화학과	46		46	40		40	39		39
	안경광학과	45		45	39		39	37		37
	스포츠과학과	35		35	32		32	34		34
	바이오메디컬학과							28		28
	자유전공학부(에너지바이오대학)				24		24	23		23
조형대학	디자인학과	98		98	92		92	95		95
	산업디자인전공	46		46	43		43	45		45
	시각디자인전공	52		52	49		49	50		50
	도예학과	37		37	34		34	36		36
	금속공예디자인학과	43		43	40		40	40		40
	조형예술학과	35		35	32		32	32		32
인문사회대학	행정학과	52		52	41		41	41		41
	영어영문학과	30		30	26		26	25		25
	문예창작학과	42		42	37		37	35		35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대학)				12		12	12		12
기술경영융합대학	산업공학과	93		93	78		78	79		79
	산업정보시스템전공	63		63	50		50	49		49
	ITM전공	30		30	28		28	30		30
	MSDE학과	41		41	38		38	38		38
	경영학과	84		84	69		69	73		73
	경영학전공	44		44	34		34	38		38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40		40	35		35	35		35
	자유전공학부(기술경영융합대학)				14		14	14		14
미래융합대학	융합기계공학과	12		12						
	건설환경융합공학과	12		12						
	헬스피트니스학과	12		12						
	문화예술학과	12		12						
	영어과	12		12						
	벤처경영학과	12		12						
	자유전공학부(미래융합대학)				72		72	72		72

단과대학	모집단위	2024학년도 입학정원			2025학년도 입학정원			2026학년도 입학정원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주간	야간	계
창의융합대학	인공지능응용학과	100		100	67		67	67		67
	지능형반도체공학과	30		30	54		54	54		54
	미래에너지융합학과	30		30	20		20	20		20
	자유전공학부(창의융합대학)				69		69	69		69
교양대학	ST자유전공학부				203		203	188		188
계		2,177		2,177	2,227		2,227	2,269		2,269

※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유전공학부 모수제외 학과(전공)

- 2025학년도: 디자인학과,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스포츠과학과, MSDE학과, 산업공학과 ITM전공
- 2026학년도: 디자인학과, 도예학과, 금속공예디자인학과, 조형예술학과, 스포츠과학과, MSDE학과, 산업공학과 ITM전공, 컴퓨터공학과, 환경공학과

※ 자유전공학부 모수제외 학과(전공)는 전공선택 범위에서 제외

※ 자유전공학부는 ST자유전공학부와 7개 단과대별 모집단위(자유전공학부(공과대학), 자유전공학부(정보통신대학), 자유전공학부(에너지바이오대학), 자유전공학부(인문사회대학), 자유전공학부(기술경영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미래융합대학), 자유전공학부(창의융합대학))를 말함

[별표 5] (개정 2022. 7. 1., 2023. 2. 28., 2023. 6. 1., 2025. 1. 1., 2025. 3. 1., 2025. 6. 27.)

대학 학위 종류(제67조제2항 관련)

학과(학부)명		학사학위	학과(학부)명		학사학위
기계시스템공학부	지능형로봇전공	공학사	디자인학과	산업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미래자동차전공	공학사		시각디자인전공	디자인학사
기계공학과		공학사	도예학과		미술학사
안전공학과		공학사	금속공예디자인학과		미술학사
신소재공학과		공학사	조형예술학과		미술학사
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사	행정학과		행정학사
건축학부(건축공학전공)		공학사	영어영문학과		문학사
건축학부 (건축학전공)	전일제	건축학사	문예창작학과		문학사
	정시제	이학사	산업공학과	산업정보시스템전공	공학사
				ITM전공	공학사
전기정보공학과		공학사	MSDE학과		공학사
전자공학과		공학사	경영학과	경영학전공	경영학사
스마트ICT융합공학과		공학사		글로벌테크노경영전공	경영학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사	융합기계공학과		공학사
화공생명공학과		공학사	건설환경융합공학과		공학사
환경공학과		공학사	헬스피트니스학과		이학사
식품생명공학과		이학사	문화예술학과		미술학사
정밀화학과		이학사	영어과		문학사
안경광학과		이학사	벤처경영학과		경영학사
스포츠과학과		체육학사	정보통신융합공학과		공학사
바이오메디컬학과		이학사	인공지능응용학과		공학사
글로벌한국어문화학과		문학사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공학사
AI·미디어학과		미디어학사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공학사
글로벌IT컨버전스학과		공학사			

※ 공학인증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은 공학사 표기 외에 해당 공학심화과정을 이수하였음을 따로 표기할 수 있음

[별표 6] (제80조제6항 관련) (개정 2023. 1. 1.), (개정 2023. 2. 28.), (개정 2023. 9. 1.),
(개정 2024. 2. 29.), (개정 2024. 10. 18.)

일반대학원 학위 종류

대학원	학과	학위명
일반대학원 (석사)	기계설계로봇공학과	공학석사
	기계공학과	공학석사
	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기계정보공학과	공학석사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공학석사
	신소재공학과	공학석사
	자동차공학과	공학석사
	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건축과	공학석사
	전기정보공학과	공학석사
	전자공학과	공학석사
	컴퓨터공학과	공학석사
	스마트ICT융합공학과	공학석사
	화공생명공학과	공학석사
	환경공학과	공학석사
	식품생명공학과	공학석사
	정밀화학과	이학석사
	산업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시각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도예학과	미술학석사
	금속공예디자인학과	미술학석사
	조형예술과(조형예술전공)	미술학석사
	조형예술과(예술이론전공)	미술학석사
	경영학과	경영학석사
	TESOL학과	문학석사
	문예창작학과	문학석사
	안경광학과	이학석사
	스포츠과학과	체육학석사
	MSDE학과	공학석사
	IT융합공학과	공학석사
	인공지능응용학과	공학석사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공학석사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공학석사 또는 경제학석사
	스마트시티공학과	공학석사
	<협동과정>	
	AI경영학과 (참여학과 : 경영학과, 인공지능응용학과)	경영학석사
	<학연과정>	
	기계정보공학과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학석사
	신소재공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학석사

대학원	학과	학위명
	화공생명공학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공학석사
	MSDE학과(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학석사
	인공지능응용학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학석사
	기계설계로봇공학과	공학박사
일반대학원 (박사)	기계공학과	공학박사
	안전공학과	공학박사
	기계정보공학과	공학박사
	자동차공학과	공학박사
	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박사
	건축과	공학박사
	전기정보공학과	공학박사
	전자공학과	공학박사
	컴퓨터공학과	공학박사
	정밀화학과	이학박사
	안경광학과	이학박사
	IT융합공학과	공학박사
	데이터사이언스학과	공학박사
	신소재공학과	공학박사
	환경공학과	공학박사
	화공생명공학과	공학박사
	산업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시각디자인학과	디자인학박사
	도예학과	미술학박사
	금속공예디자인학과	미술학박사
	조형예술과	미술학박사
	문예창작학과	문학박사
	스마트ICT융합공학과	공학박사
	식품생명공학과	공학박사
	MSDE학과	공학박사
	스마트시티공학과	공학박사
	인공지능응용학과	공학박사
	지능형반도체공학과	공학박사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공학박사 또는 경제학박사
	경영학과	경영학박사
	<학연과정>	
	인공지능응용학과(한국전자통신연구원)	공학박사
	신소재공학과 (한국재료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공학박사

[별표 7] (제80조제6항 관련) (개정 2022. 3. 1.), (개정 2022. 7. 1.), (개정 2022. 9. 1.),
(개정 2023. 2. 28.), (개정 2023. 9. 1.), (개정 2024. 10. 18.)

전문대학원 학위 종류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	학술학위명	전문학위명
철도전문 대학원 (석사)	철도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철도시스템)
	철도건설·정책학과	공학석사 또는 경영학석사	공학석사(철도건설) 또는 경영학석사(철도정책)
철도전문 대학원 (박사)	철도시스템공학과	공학박사	공학박사(철도시스템)
	철도건설·정책학과	공학박사 또는 경영학박사	공학박사(철도건설) 또는 경영학박사(철도정책)
IT정책 전문 대학원 (석사)	AI공공정책전공	정책학석사	정책학석사(AI공공정책)
	디지털문화정책전공	정책학석사	정책학석사(디지털문화정책)
	산업정보시스템전공	공학석사	공학석사(산업정보시스템)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정책학석사	정책학석사(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IT디자인융합전공	디자인학석사	디자인학석사(IT디자인융합)
IT정책 전문 대학원 (박사)	AI공공정책전공	정책학박사	정책학박사(AI공공정책)
	디지털문화정책전공	정책학박사	정책학박사(디지털문화정책)
	산업정보시스템전공	공학박사	공학박사(산업정보시스템)
	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전공	정책학박사	정책학박사(융합미디어·콘텐츠정책)
	IT디자인융합전공	디자인학박사	디자인학박사(IT디자인융합)
국방 융합과학 대학원 (석사)	<에너지기술융합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정책학과	공학석사 경제학석사	공학석사(에너지시스템) 경제학석사(에너지정책)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국방방호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또는 정책학석사	공학석사(정보통신미디어) 공학석사(국방방호) 또는 정책학석사(국방방호)
	국방ICT융합공학과 국방로봇·AI공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국방과학) 공학석사(국방로봇·AI)
	국방경영·안전공학과	공학석사	공학석사(국방경영·안전)
국방 융합과학 대학원 (박사)	<에너지기술융합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에너지정책학과	공학박사 경제학박사	공학박사(에너지시스템) 경제학박사(에너지정책)
	정보통신미디어공학과 국방방호학과	공학박사 공학박사 또는 정책학박사	공학박사(정보통신미디어) 공학박사(국방방호) 또는 정책학박사(국방방호)
	국방ICT융합공학과 국방로봇·AI공학과	공학박사 공학박사	공학박사(국방과학) 공학박사(국방로봇·AI)
	국방경영·안전공학과	공학박사	공학박사(국방경영·안전)
SeoulTech- KIRAMS 의과학 대학원 (석사)	방사선의과학전공 의생명과학전공	이학석사 이학석사	이학석사(방사선의과학) 이학석사(의생명과학)
SeoulTech- KIRAMS 의과학 대학원 (박사)	방사선의과학전공 의생명과학전공	이학박사 이학박사	이학박사(방사선의과학) 이학박사(의생명과학)

[별표 8] (제80조제6항 관련) (개정 2022. 9. 1.), (개정 2024. 2. 29.), (개정 2024. 6. 1.)

특수대학원 학위 종류

대학원	학과	전문학위명
산업대학원	글로벌안전공학과	공학석사(안전방재)
	해외건설공학과	공학석사(해외사업관리)
	생산기술융합공학과	공학석사(생산기술융합)
	기술창업MBA학과	경영학석사(기술창업기획) 또는 경영학석사(기업가정신)
	빅데이터AI경영정보학과	경영학석사(빅데이터AI) 또는 공학석사(빅데이터AI)
	건설시스템공학과	공학석사(토목공학)
주택도시 대학원	건축환경·설비공학과	공학석사(건축환경·설비공학)
	건축공학과	공학석사(건축공학)
	건축학과	공학석사(건축학)
	도시부동산개발학과	공학석사(도시부동산개발학) 또는 행정학석사(도시부동산개발학)

[별지 제1호서식] (제67조제2항 관련, 졸업증서) (개정 2022. 9. 1.), (개정 2024. 2. 29.)

졸업증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정해진 전 과정을 이수하고 아래의 자격을 얻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 학과(부) ○○ 전공 (○○프로그램) ○○ 학사
(△△ 부전공)

□□ 학과(부) □□ 전공 (○○프로그램) □□ 학사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대학장 ○○박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대학장 □□박사 □□□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

[별지 제2호서식] (제67조제2항 관련, 영문졸업증서) (개정 2025. 3. 1.)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Name)

the degree of

Bachelor of

at the Department(school) of

,

and the degree of

Bachelor of

at the Department(school) of

,

(Minor:

)

with all the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Month/date, year)

(Signature)_____

(Name)

DEAN, (College)_____

(Signature)_____

(Name)

DEAN, (College)_____

(Signature)_____

(Name)

PRESIDENT

Stamp Proof

[별지 제3호서식] (제67조제3항 관련, 수료증서)

수 료 증 서

○ ○ ○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본 대학교에서 정해진 전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를 인정함.

○○ 학과(부) ○○ 전공 (○○프로그램 △△ 부전공)
□□ 학과(부) □□ 전공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대학장 ○○박사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대학장 □□박사 □□□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박사 ○○○

학위번호:

[별지 제4호서식] (제78조제2항 관련, 학술학위용)

제 호

수료증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교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과정
학과(협동과정, 전공)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인정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성명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
인)

[별지 제5호서식] (제78조제2항 관련, 전문학위용)

제 호

수료증서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교 ()대학원의 석(박)사 학위과정
학과(협동과정, 전공) ()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인정
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성명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
인)

[별지 제6호서식] (제80조제3항 관련, 학술학위용)

석(박)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
○학과(협동과정,전공)를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
격하여 ○○석(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성명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박)사 학위를 수여
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서울과기대 석(박)

[별지 제7호서식] (제80조제3항 관련, 전문학위용)

석(박)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교 ()대학원 석(박)사 학위과정 ○
○학과(협동과정,전공)를 이수하고 정해진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
격하여 ○○석(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성명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박)사 학위를 수여
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
인)

학위등록번호 서울과기대 석(박)_____

[별지 제8호서식] (제80조제4항 관련, 무논문과정 전문학위용)

석 제 호

학 위 기

성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우리대학교 ()대학원 ○○학과(협동과정, 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인정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장 ○○박사 ○ ○ ○ (직인)

위의 인정에 의하여 ○○석사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총장 ○○박사 ○ ○ ○ (직인)

학위등록번호 서울과기대 석

[별지 제9호서식] (제80조제3항 관련, 영문학위기)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on the recommendation of the faculty
has conferred upon*

(영문 성명)

the degree of

(영문 석(박)사학위명)

in (소속 학과, 전공 또는 프로그램 영문명)

with all the honors, rights, and privileges thereto pertaining

Given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학위수여 일자)

(소속 대학원장 서명)

(총장 서명)

Dean of the Graduate School of ○○○

President of the University